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외재난 재외동포 긴급지원 등〉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75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정착 지원	2
2. 해외재난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긴급지원	4
3.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방식 변경	6
4.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목적 조정	8
5.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년 12월 18일

3. 회부일자 : 2024년 12월 19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로서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 발전의 소중한 원동력이자 자산이며, 거주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지난 2023년 6월 5일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였지만, 여전히 법적·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국내외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및 해외 위난(危難)에 처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그 역량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Ⅲ. 검토의견

1.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정착 지원

개정안은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재외동포의 <u>거주국</u> 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다. ~ 자.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u>거주국 및 대한</u> <u>민국</u> ----- ----- 다. ~ 자.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서는 “재외동포정책”으로 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②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③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④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문화·경제·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⑤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⑥ 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⑦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정책, ⑧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 ⑨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등을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 체계에서도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체류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¹⁾을 추진 중이며, 2025년에는 관련 예산으로 10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및 국제정세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국적 동포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²⁾에 있고,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 사업은 저출생·지방소멸 등 인구정책과도 맞물려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1)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안정적인 정주 지원 사업으로 1) 대상별 맞춤형 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지역별 국내 동포 정착지원 사업 추진, 3) 국내 동포 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 4) 국내 체류 동포 정주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5) 국내 동포 정착지원 안내서 제작·배포, 6)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음.

2)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 수: 2020년 811,000명, 2021년 779,000명, 2022년 805,000명, 2023년 849,000명 (2025.1. 재외동포청 제공자료)

이에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상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체계자구적 조정이 필요해 보임.

2. 해외재난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긴급지원

개정안은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해외재난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긴급구호에 관한 정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차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 자.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자. (생략) 차. 「 <u>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u>해외재난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긴급구호에 관한 정책</u>

<u>차.</u> (생략)	<u>카.</u> (현행 차목과 같음)
----------------	-----------------------

재외동포청은 현재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에는 동 사업을 위한 예산 1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해당 지원사업은 재외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 지원 등의 조치가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위난의 심각성 및 재외동포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외 위난에 대한 재외동포 지원 개요 】

- (지원 내용) 식품·의류 침구 등 생필품, 의약품, 임시거소 등 지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재외동포단체가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신청서 제출

개정안은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사회를 지원하고, 현재도 시행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재외동포청은 외국국적 동포 지원 시 외교적 마찰 가능성, 내국민 재난 피해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현행법에 해외 위난 동포 긴급지원 정책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방식 변경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 소관별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자체평가 결과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생략) ②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u> ③ <u>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u> ③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외동포청</u>

다.	<u>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현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³⁾

현행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면,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는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3)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4년~’28년)」에 따라 2024년도의 경우 재외동포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89개의 과제로 구성됨.

※ 「2024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관계부처 주요 과제

- (법무부) 복수국적 제도 운영,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등
- (보훈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및 훈장 전수 등
- (산업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지원, 차세대 경제인 해외 현지 교육 및 교류 지원, 글로벌창업무역스쿨 모국 방문교육 운영 등
- (복지부) 해외 입양인의 권익 증진, 귀환 다문화가족 보건·의료 지원, 재외동포 대상 보건·의료 지원 등
- (교육부)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지원 강화,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추진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제출 방식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4.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목적 조정

개정안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목적을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서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의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u>강화 정책</u>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 ----- ----- <u>강화를 위한</u> <u>재외동포청의 정책 수행</u> 을----- -----

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 한다. ② ~ ⑦ (생 략)	-----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및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정부 출연 법인임.

개정안에 따른 경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 범위가 재외동포 관련 정책의 지원을 위한 것에서 재외동포청의 정책 수행에 대한 지원으로 사실상 축소되는 바,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임.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⁴⁾와 배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

개정안은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7조(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u> <u>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상 재외동포정책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으며,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⁵⁾ 및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

같은 법 시행령⁶⁾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⁷⁾

개정안은 재외동포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는 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한정하고 있는바, 해외 소재 재외동포단체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63

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7) 2025년도 예산의 경우 보조금으로 332억 7,100만원(민간경상보조 1억 8,100만원, 해외경상이전 324억 4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 8,600만원)이 반영됨.